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발생 시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7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3.
3. 회부연월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
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10(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 구호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2. 동물 구호에 관한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3.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현행	개정안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 기간 중 주요 피해지역이었던 경북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 등 5개 시·군에서 총 1,994마리의 반려동물 피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초대형산불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합계	개	고양이	새
합계	1,994	1,944	48	2
사망	1,665	1,662	1	2
상해	329	282	47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약 29.2%가 반려동물 양육가구임에도 불구하고¹⁾, 초대형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현행 재난관리체계에서는 동물 대피 및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일관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5년 초대형산불 발생 시 산불이 인근 농촌 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가축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가축을 신속히 대피시키거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대응 절차는 부재하였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²⁾.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of 2006)」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약 30개 주(州)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에 있는데, 동 법률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州)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³⁾.

1) 농림축산식품부(2026.02.12.) 보도자료,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2) 국회입법조사처(2025),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p.78

3) 국회입법조사처(2025),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2379호

개정안은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 및 「재해구호법」 등 재난관리 법령이 반려동물 또는 가축의 대피 및 구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관리 법령의 체계 및 입법 목적, 「동물보호법」에의 규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반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는 등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⁵⁾, 재난과 관련하여 동물 소유자등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⁶⁾.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한편,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동물 구호체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재난 발생 시 구호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88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동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경기도)에서는 위생 관리, 소음 문제, 다른 이재민 등에 대한 위협이나 불편·불안 초래, 구호현장의 혼선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⁷⁾.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 현장에서 동물 구호체계의 전반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법적 측면의 과제로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구조·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⁸⁾.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지 여부는 법 체계 및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동물보호법」과의 비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면서, 자체 여건에 따라 동반 주거 형태 외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임시주거시설(함께주거, 별도구역 동반, 위탁시설 연계)도 포함하는 포괄적 임시주거 형태를 제시함.

8) 국회입법조사처(2025),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2379호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 구호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의 보완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